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623호(號) 1935(昭和 10)년 10월 9일

○ 회 보(彙報)

○ 토목(土木)

● 조선공유수면매립령(朝鮮公有水面埋立令)에 의거한 처분사항(處分事項)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[左]와 같다.

매립준공인가(埋立竣工認可)

준공인가 연월일(年月日)	매립장소 (埋立場所)	수면의 종류	목적(目的)	준공면적(竣工面積: 坪) 민간소유(民有)	매립지 취득자의 주소성명	비고(備考)
1935(昭和 10)년 10월 3일	경상남도 부산부 범일정(慶尙南道 釜山府 凡一町) 앞	바다[海]	공장부지(工場敷 地) 및 시가지(市 街地) 조성	38,827.08	부산부 범일정 부산진매축주식 회사(釜山鎭埋築 株式會社)	1925(大正 14)년 8월 12일 제248 호 면허분(免許 分)

공용지(公用地), 하역장(荷役場) 구거(溝渠)¹⁾는 국가에 귀속하고, 호안(護岸) 돌축대[石垣]²⁾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.

1) 역자 : 급수 또는 배수를 위해 물을 통하도록 관 것을 말함.

2) 역자 : 해안 강변 호안 및 제방을 보호해서 수해를 막는 돌축대를 말함.